

【논 문】

만주의 ‘벌거벗은 생명’과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

— 1938~1945년 관동군의 特殊移送 자료를 중심으로 —

서 이 종*

Ⅰ 차 Ⅱ

1. 들어가는 말 :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는 누구인가?
2. 731부대의 特設監獄과 세균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생체실험
3.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와 만주국의 ‘벌거벗은 생명’
4.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와 特殊移送 (1) : 항일활동가와 사상범
5.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와 特殊移送 (2) : 지역주민들
6. 맺는 말 : 731부대 特設監獄으로의 特殊移送과 생체실험 희생의 역사적 의미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38년 하얼빈 핑팡에 건립된 특설감옥의 생체실험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동원과정을 관동군의 특수이송 자료를 통해서 그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2장에 점령지인 만주지역의 인민들은 전쟁포로와 같은 예외적인 지위를 가졌고 특히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가나 소련 등 적국 첩자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보호조치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벌거벗은 생명이었다. 3장 특수이송 자료를 통해서, 특수이송의 대상은 항일운동가와 소련첩자의 주관적 혐의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수이송의 범주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현장 헌병대 또한 상이하였으며

*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3 S1A3A2043309)이며 자료이용에 도움을 준 하얼빈 731연구소 진청민 관장과 양안준 부소장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

그러한 주관적인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잔인한 고문 등 자백 절차를 거쳐 이를 근거로 헌병대의 소견과 헌병대 본부의 확인을 통해서 특수이송하였다. 4장 특수이송 자료를 통해서 일반 인민들이 대거 특수이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련과의 국경의 다수의 생활인들이 소련침자로 **오** 특수이송의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거 반만항일 세력으로 자백하도록 강요하여 특수이송의 대상이 되었다.

주제어 : 특수감옥, 예외상태와 벌거벗은 생명, 생체실험 희생자, 항일운동가, 사상범

1. 들어가는 말 :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는 누구인가?

유럽의 팽창과 식민지 체제의 수립 이후 전염병의 창궐에 대응하는 의생명의 발달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그 전염매체로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큰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상황은 특히 전(쟁)간 시기에 세균전에 대한 공포를 낳았으며 나찌독일의 유대인 등의 생체실험과 일본제국군의 마루타실험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나찌독일의 생체실험과 달리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도쿄전범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 일본과 미국이 체계적으로 이를 은폐하여 그 존재조차 부정되고 있다.

하지만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사회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나찌독일의 유대인 등 생체실험과 비교해서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첫째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전쟁기간을 넘어선 1932년부터 1945년 패망시까지 장기간 이뤄진 생체실험이다.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1932년 도쿄 군의학교에 세균연구실이 발족한 이래 1933년 8월~1945년 8월 만주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실시한 생체실험¹⁾으로, 유대인을 강제집단수용하면서 격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38년부터 시작하여 1945년 5월 패망과 더불어 끝난 나찌독일의 생체실험과 비교하여도 그 기간이 훨씬 길고 체계적이다. 둘째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본격적인 세균전을 위한 군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세균무기 생산을 위한 생체실험이라는 사실이다.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일본 내각과 육군성의 지휘 하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731부대는 세균전을 위한 체계적인 세균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비밀부대로서 1933년 8월 하얼빈에 ‘방역급수대’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1938년 대규모 特設監獄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세균실험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하얼빈 평광(平房)의 特設監獄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외실험장, 만주나 몽골의 여러 마을에서 실시한 소규모 현장생체실험, 농안(農安)·신징(新京) 지역의 대규모 현장생체실험(서이중, 2014), 그리고 중국 대륙 전역에서 실시한 세균전 겸 세균실험을 포함한다. 하지만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그 역사적 시원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잔인성에서 특수감옥의 생체실험에 주목되어야 한다.

특히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의 면모와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특설감옥의 생체실험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내적인 생체실험 과정과 더불어 핵심적인 질문이다. 특설감옥의 생체실험 희생자는 이미 1945년 12월 소련 하바로프스키 재판 과정에서 特殊移送(혹은 특별이송)의 문서를 통해서 이송되어 살해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다량 획득되었다. 特設監獄으로의 特殊移送 기준을 명시한 1943년 3월 12일 관동군 헌병대 고시 제 120호 문건,²⁾ 特殊移送의 인수 인계시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는 관동군 헌병대의 1939년 8월 8일 작전명령 224호,³⁾ “포로 심문대강”⁴⁾ 등이 획득되

1)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세균전은 이사이 시로가 일본군에 세균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동경 군의학교에 세균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시작되어 일본 의료계 학자들은 “15년(세균)전쟁”이라고 지칭하여 ‘15年戰爭と日本の醫學醫療研究會’를 구성하여 정기 학회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동경 군의학교내 설립된 작은 규모의 세균연구소에서도 생체실험을 했다는 발골 결과가 있기 때문이었다.

2)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163, pp.166~168.

3)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184.

있고 다수의 증언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선양 재판에서의 731부대의 관계자 및 관동군 관계자의 증언과 일본에서의 일본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으로 그 단서가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特殊移送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아 그 실상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그 실상은 1997년 10월 진청민(金成民) 등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문서고(檔案館)에서 特殊移送 관련 자료 66건을 찾아내 1999년 8월 이를 공개하였고 중국 지린성(吉林省) 문서고에서도 400여건의 特殊移送 자료가 발견되어 2001년 9월 공개하였다. 이들 자료는 中國黑龍江省檔案館 등의 「七三一」部隊罪行鐵證：關東憲兵隊 “特別輸送” 檔案(2001.12)과 中國吉林省檔案館 등의 「七三一」部隊罪行鐵證：特別移送·防疫檔案選編(2003.9)의 두 권 자료집으로 발간되었다. 이들 문서는 특수이송 자료 전체의 일부이지만,⁵⁾ 진청민의 연구(金成民, 2008)에서 잘 소개되었듯이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들의 면모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731부대 특설감옥에서 생체실험의 희생자는 3,000여명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연간 적어도 600여명을 이른다”⁶⁾ 혹은 “연간 500명에서 600명의 죄수가 731부대로 특별이송되었다”⁷⁾는 그러한 증언 자체에 기초해 볼 때 하얼빈 핑팡 지역에 대규모 생체실험 감옥시설을 본격 가동한 1939년 8월 이후 1945년 8월까지 6년간 731부대에서 직접 생체실험 실험대상자로서 희생된 수는 최소한 3천6백여 명에 이른다.⁸⁾ 그러나 特殊移送의

4) 中央檔案館 等, 1989, p.89.

5) 이들 특수이송 자료를 통해 실명 확인된 희생자는 343명뿐이며 4개 지부나 다른 지역에서도 포함하고 증언 자료 등 여타 자료를 통해서 실명 확인 희생자는 전체 1,467명뿐이다.

6) 1939년 4월부터 1943년 3월까지 731부대 본부의 제1부, 3부, 4부, 총부부장 등 주요 부서를 책임졌던 가와시마 기요시(川島清) 소장의 극동재판에서의 증언(Materials of the Trials, 1950 : 57)은 731부대 본부에서의 생체실험 실험대상자 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731부대의 4개 지부에서 행한 생체실험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7) 극동재판에서 한 가와시마 기요시 소장의 다른 증언 중에서(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116) 그렇게 증언하였다. 731부대 생체실험 현장에서 조수로 있었던 上田彌太郎도 매달 50여 명이 기차에 실려왔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며(中央檔案館 等, 1989, p.66), 매년 600명이 희생된 것이 사실에 근접해 보인다.

8)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최소 3천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모리타 세이이치(森村誠一)도 마쓰무라(松村高夫)도 최소 3,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며(森村誠一, 1983, p.106; 松村高夫, 1991; 解學詩·松村高夫, 1998, p.1), 15년 전쟁과 일본의 의학의료연구회에

공문서를 통해, 731부대가 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시설을 본격가동한 6년을 포함하여 세균연구가 시작된 1932년 이래 13년 동안 731부대의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수는 적어도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金成民, 2008 : 22). 이렇듯, 特殊移送 문건을 통해서 特殊移送 방법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주소, 직업,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청민(金成民, 2008)의 연구는 特殊移送의 두 자료집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特殊移送의 사회역사적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만주 주민들의 ‘벌거벗은 생명’(Agamben, 1995)론을 제기하고 동시에 두 자료집에 실린 特殊移送 원자료를 분석하여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에 희생된 사람들의 동원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731부대의 特設監獄과 세균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생체실험

관동군 731부대의 하얼빈 평양 본부 내의 特設監獄 시설은 대규모 탈옥 사건 이후 1938년 건립하여 1945년 패망할 때 파괴한, 생체실험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특수시설이다. 731부대는 1933년 만주 하얼빈으로 그 기지를 옮겨 생체실험을 실시하다가 대규모 탈옥사건으로 1936년부터 하얼빈 평양(平房)에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세균무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대규모 특수시설을 계획하여 설립하였다. 1938년 6월부터 건설하여 1937년 7월 중일전쟁이후 1939년 8월부터는 가동하기 시작하여 대규모 생체실험을

서도 최소 3,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劃田啓史郎, 2013, p.2).

9) 1941년 9월부터 1944년 8월까지 관동군 헌병대 사령부에서 제3과장과 사령관 부관을 맡아 特殊移送를 직접 결재하였던 요시후사 도라오(吉房虎雄) 중좌는 特殊移送의 사례를 회상하면서 최소 5천명이 생체실험의 실험대상자로 희생되었다고 말했다(金成民, 2008, p.796). 이 수치는 731부대에서의 생체실험에 직접 희생된 수치이며 731부대 이외에 중국 전역의 방역급수대나 병원, 기타 부대에서 이루어진 희생자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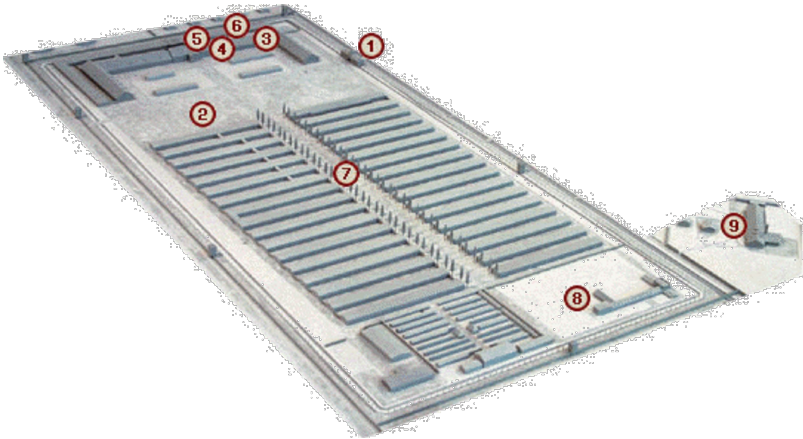
실시하였다. 1940년 이후 생체실험 장소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나 그 세균무기의 연구 및 생산, 테스트 장의 중심지는 여전히 하얼빈 핑팡의 特設監獄이었다.

무엇보다도 첫째 特設監獄은 완전 폐쇄된 생체실험의 비밀장소였다. 特設監獄 시설은 나찌독일의 강제 수용소(concentration camp)에서 연원한다. 이시이 시로(石井四郎)는 스스로 “독일식 비밀건축법으로 지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金成民, 2008 : 78). 특히 나찌독일의 강제 수용소의 모델이 된 ‘다하우 수용소’(KZ Dachau)는 핑팡의 特設監獄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기능과 공간구조는 전혀 상이하였다. 나찌독일의 강제 수용소는 강제노동과 훈육의 장소로서 계획되어 점차 인종청소(말살)의 장소로 발전하였다.¹⁰⁾ 하지만 소규모로 정치범을 수용하던 초기 수용소와 달리 다하우 수용소는 그 기능이 격리수용을 넘어 처벌과 훈육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후 즉 2차 대전이 본격적인 1936년 이후 아우슈비츠 비어켄아우(Auschwitz-Birkenau) 수용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몰살장소로서 수용소로의 진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하우 수용소는 나찌 독일의 전형적인, 오래된 수용소이다.¹¹⁾ 하인리히 히틀러(Heinrich Himmler)는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공산주의자와, 필요하다면, 추방자(Reichsbanner)과 막스주의 조직원들”을 격리수용한다고 공표하였고 1933년 6월 수용소 책임자가 된 테오도르 아이커(Theodor Eicke, 1892~1943)는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위험스런 국가의 적(gefährliche Staatsfeinde)’을 처벌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처벌형’ 수용소 계획을 추진하였다. 초기 수감자는 나찌정권의 정치적 반대파로서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노동조합활동가, 부분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치가였으며¹²⁾ 점차 범죄자, 집시(Sinti und Roma), 동성애자 그리고 무엇보다

10) 수용소는 제2차 세계전쟁의 발발로 발생한 대규모 전쟁포로, 난민, 체포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시설로서, 1945년까지 유럽 전역에 24개 주요 수용소(Hauptlager), 1,000개의 외부수용시설(Aussenlager) 등으로 증가하였다.

11) 당시 뮌헨 경찰국장이며 바이에른 정치경찰 책임자인 하인리히 히틀러의 명에 따라, 1933년 3월 22일 뮌헨에 가까운 다하우에 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5,000명 정도의 정치범을 위한 수용소로 세워졌다.

도 유대인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이커는 강제수용자의 제복을 통일하고 각 신분에 따라 완장과 명찰을 차게 하였으며 그 해 10월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수감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 지침’을 실시하여 “참을성은 곧 약함이라는 인식 하에 조국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는 가차없이 공격을 감행” 하라고 지시하였다. 1934년 7월 3일 수용소 감독관(Inspector)이자 SS감시단¹²⁾ (Wachverbaende) 감독관이 된 아이커는 모든 수용소에 다하우 수용소의 지침을 도입하는 등 처벌형 “다하우(Dachau) 모델”을 다른 수용소로 확산시켰다. 그는 1936년 히틀러가 제국경찰(Reichpolizei) 총책임자가 된 이후 바로 옆에 새로운 신식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여 1938년 8월 중순에 완성하였다. 정적의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원치않는 집단을 격리하고 훈육하고 살해하는 장소로서 수용소 조직과 공간을 구성하고 이후 다른 새로운 수용소의 표본이 되었고 홍보 장소가 되었다.



12) 1934년 4월 10일 2,450 수감자 중에 공산주의 활동가 942명(38.5%), 공산당 조직원 589 (24.0%), 배반자(Hochverrat) 222명(9.1%), 국가기관 비판자 101명(4.1%), 맑스주의 활동가 98명(4.0%) 등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Benz/Distel, 2005, p.53), 정치적, 사상적 반대파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다.

13) 1934년 7월 SS는 모든 수용소의 감시권한을 SA로부터 넘겨받고 민간의 내부행정체계를 SS감독관의 수직명령체제로 개편하였다.

나찌독일의 수용소는 격리수용시설이며 동시에 강제노동과 훈육의 공간이었다. “노동은 자유롭게 한다(Arbeit macht frei)”라는 슬로건 하에 순종-열심-공경-질서-청결-영양-진실함-조국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였다. 수용소는 아래 그림과 같이¹⁴⁾ 중앙에 좌우로 10m 폭에 100m 길이의 17개 막사가 정렬되어 있고 각 막사는 45명의 공동 침실공간, 생활공간, 화장실 등의 Stube 4개로 나뉘어 총 18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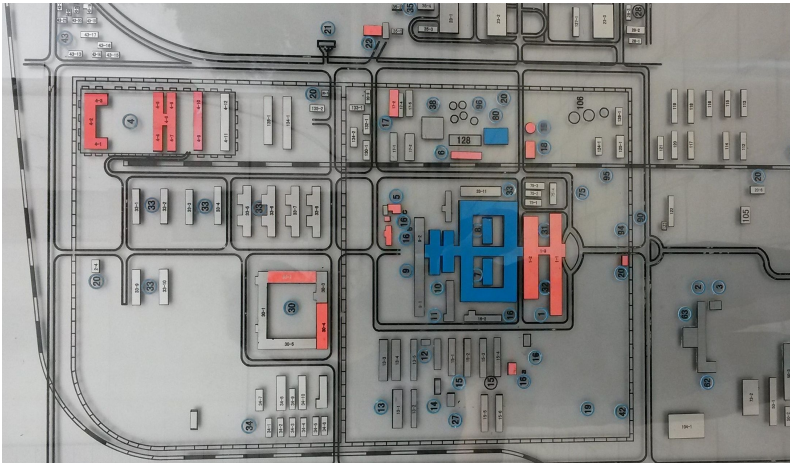
문제는 다하우 모델을 테러의 체계화와 조직화로 불리울 정도로 훈육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수용소의 공간배치에서 조화와 점호의 훈육공간③④) 뿐만 아니라 독방의 처벌공간⑤⑥)을 수용소의 전면에 배치하고 반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 복종과 훈육을 강조하였다. 1940년 4월 27일 결정된 아우슈비츠 스타라거(Auschwitz-Stammlager)의 초기 설계도를 보면, 다하우 공간구조에서 강압적 훈육공간인 독방공간을 다소 줄어들었으며 실제 모습에서 보면 그런 공간이 줄여서 가운데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개방적 공간으로 변동하였다기보다는 소극적인 독방공간을 넘어 더 조직적으로 테러를 체계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찌독일의 다하우 수용소에 비해, 하얼빈 핑팡의 特設監獄 시설¹⁵⁾은 1937년 설계될 때부터 보안을 최우선한 완전폐쇄형 비밀시설로 설계되었다. 다하우의 독방형 훈육감옥을 장방향으로 더욱 늘려 지하공간을 포함한 2층짜리 완전 사각형 폐쇄공간으로 만들고 그 주위에 다시 3층짜리 실험시설 공간을 에워쌓아 밖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특수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오직 지하통로를 통해서 이동하여 외부와 철저히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特設監獄의 설립 이후 수감자 중 아무도 살아서 빠져나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비밀시설이었다. 이러한 特設監獄을 중심으로 외곽에 3층의 실험시설공간을 완전 에워쌓아 설치하고 그 주위에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

14) ① 입구 ② 조회장소 ③ 점호 ④ 점호지휘 ⑤ 독방감시 ⑥ 독방 ⑦ 통로 ⑧ 종교 ⑨ 화장터

15) 아래 그림의 파란색 부분.

는 각종 실험실 및 부대시설을 주위에 배치되어 있었다. 1938년 6월 건축하기 시작하여 부지 16만m²에 각종 부대시설까지를 포함한 70개 건물을 포함하여 80개의 시설이 입지하여 총 넓이 6km²에 이르렀다. 일본제국군은 이들 지역 전체를 특수군사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침입자의 경우 치안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였다. 이러한 본부 시설 이외에도 하얼빈 시내의 난동 주둔지, 소규모 야외실험장, 1943년 세균공장과 비행장을 지은 안다(安達) 야외실험장, 그리고 이후 1940년 대규모 세균배양과 생산 기지로 세워진 4개의 지부를 건설하였다.



둘째 特設監獄은 일본제국군이 세균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균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핵심 군사시설이었다. 당시 세균무기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일본은 일본 내각과 일본 육군의 지시 하에서¹⁶⁾ 이시이 시로에 의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본군 참모본

16) 일왕의 비밀지령에 1936년 731부대가 평광 지역에 대규모 세균실험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였다고 1939년 4월부터 1943년 3월까지 731부대의 제1부, 제3부, 제4부를 책임졌던 가와시마 기요시(川島清)가 극동재판에서 증언하였다(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249)

부는 세균전을 위한 생체실험 즉 “마루타사용 실험은 중앙에서 크게 전군적인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¹⁷⁾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特設監獄의 생체실험은 군의와 촉탁의 신분으로 일본 의생명분야의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731부대는 의학부를 졸업한 군의 뿐만 아니라 생물학부, 수의학부 전공자들이 주도하였다. 본부 부대는 세균 무기를 위한 기초연구를 하는 제1부, 실제 테스트를 하는 제2부, 세균무기 공장을 관리하는 제3부와 세균무기를 대량생산하는 제4부 및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본대 이외에 4개의 지대를 두어 세균배양 및 세균무기의 생산과 보관을 분산하여 관리하였다. 731부대는 세균의 기초적 실험과 세균무기의 실험 등을 위한 군의 등 전문연구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위생병, 단기 교육지원인력 등을 중심으로 1939년 400명이었던 규모가 1942년에는 1,000여 명으로 1945년 3,000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731부대의 세균 생체실험은 일본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과 기초의학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군의 장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들 생체실험은 전쟁상황의 예외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진 당시 일본의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현장의 윤리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를 담당한 제1부 의생명분야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731부대 제1부 세균연구팀의 14개 연구팀과 책임자의 학력

연구팀	책임자	책임자 출신학교	박사학위	연구경력
장티푸스균 연구팀	다베 이화(田部井和)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의학	교수 재직
콜레라 연구팀	미나도 마사오(溱正男)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의학	조수
적리균 연구팀	에지마 신페이(江島眞平) 아키사다 다이스케(秋貞泰鋪)	도쿄제국대학교	생물학 생물학	교수 재직 교수 재직

17) 1944년 5월 23일 일본 육군성 의무국 의사과장 오쓰카 후미오(大塚文郎) 군의대좌의 비망록에 적힌 「小出中佐報告(滿洲出張)」(吉見義明, 1996, p.94)

페스트 연구팀	후루하다 다케오미(隆旗武臣) 다카하시 마사히코(高橋正彦)	홋카이도제국대학 의학부 만주의대	의학 의학	연구생
병리 연구팀	이시가와 타츠오마루(石川大刀雄丸) 오카모도 고조(岡本耕造)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 병리학	강사 강사
동상, 생리 연구팀	요시무라 히사도(吉村壽人)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생리학	조수
병독 연구팀	가사하라 시로(笠原四郎)	게이오대학 의학부	병리학	교수 재직
페스트 전염매개물 연구팀	다나카 히데오(田中英雄)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위생학	
세균 감염성 연구	가와가미 스스무 (川上漸)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	
리케차병원체 연구	노구치 게이이치(野口圭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혈청, 해부 연구팀	우쓰미 가오루(内海薫)			
결핵, 성병 연구팀	후다키 히데오(二本秀雄)	가나자와대학 의학부	의학	
탄저균 연구팀	오타 기요시(太田澄)	오카야마 의학전문학교	의학	
약리 연구팀	소미 마사오(草味正夫)			

* 연구경력에서 조수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조수이며 교수 재직은 만주의대 교수임.

제1부에서 세균의 기초연구를 위한 생체실험을 하였다면, 제2부에서는 세균을 이용한 무기의 실제 효력을 실험하는 생체실험을 실시하였다. 세균 무기의 효력을 실험하는 생체실험은 더 실전에 가깝게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생체실험으로 못지않은 실험대상자가 희생되었으며 더 대규모로 시행되었다. 세균무기 실험팀인 제2부에는 농작물병균 및 해충의 전염성을 실험하는 연구팀, 곤충감염 실험 즉 페스트균을 주입한 쥐의 피로 비록을 배양하는 실험을 담당한 연구팀, 실제 세균무기를 실험하는 팀이 있

었다. 제4부와 4개 지대에서도 세균생산을 위하여 그리고 세균의 동물을 통한 인간 감염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3.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와 만주국의 ‘벌거벗은 생명’

관동군 731부대에서 조장과 분대장을 맡은 간부후보생 야마시타 노부루(山下昇)는 1953년 당시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731부대 감옥에는 중국인, 소련인과 조선인을 감금하고 있었다. 이들로 세균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세균을 먹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하조직에 주사하는 것이다. 실험을 할 피실험자를 묶어놓고 세균이 섞인 물을 입에 부어 넣었다. 우리는 매일 10~20명으로 실험을 하였고 이 방법을 400여 명에게 사용하였다. 피하조직에 주사하는 것은 250여 명에게 사용하였다. 피실험자 중에는 소련인도 있었다. 중국인이 제일 많았고 조선인도 있었지만, 누가 조선인 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피실험자 중에는 여자도 5~6명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포로이고 연령은 모두 19~40세 사이였다. 세균을 부어넣을 때 현장에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피험자가 반항하면 헌병들이 나서서 제지시켰다. 반항이 심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하기도 하였다. 현장의 헌병들은 군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우리 조교들도 모두 군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부어 넣거나 주사하는 세균의 양은 모두 군의가 정하였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균이 어떤 균인지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 후에 실험대상자의 발병증세를 보고서야 우리가 사용한 균이 어떤 균인지 알 수 있었다.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한 균은 페스트균, 장티푸스균, 디프테리아 균이었다. 이러한 실험을 받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7일 후에 죽었다. 균의 독성과 성질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실험

대상자가 다 죽는 것은 아니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다가 후에 다른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으로 죽은 사람들은 끌어다 화장하였는데, 어떤 때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도 끌어다가 화장하였다. 화장용 화로의 큰 굴뚝은 매일 연기를 뿜었다. 외과에서는 해부를 진행하였다. 실험되어 죽을 사람을 해부하여 군의들은 죽을 사람의 머리, 어깨, 다리, 넓적다리를 분해하고 우리들은 다시 분해하여 해부를 진행하고 세균의 작용을 연구하였다. 731부대에서는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모두 해부하였다.”(中央檔案館 等, 1989 : 79-80)

이러한 特設監獄의 “늑대굴에 보내져서”¹⁸⁾ 인권을 박탈당하고 “마루타”(丸太)로 불리어지면서 살해당한 생체실험 희생자들은 누구인가? 무엇보다도 1933년 만주로 그 기지를 옮긴 이후 주로 초기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전쟁포로였다. 전쟁포로는 세계사나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에서도 늘 주권 밖의 ‘예외상태’(Agamben, 2003)의 전형으로서 그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1차대전 이전 明治37년 2월 14일 육군본부에 의해 하달된 俘虜取扱規則(陸達167)에 의하면 포로는 “박애심으로 다루며 모욕학대를 가하지 않는다”(2조), “불복종하는 경우 감금, 制縛 기타의 징계상의 필요에 따른 처분을 가하지”(6조)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다”(4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전쟁으로 얼룩진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 점증하여 이미 1차대전 이전 1907년 전쟁포로의 처우에 대한 헤이그(Hague)선언을 발표하였고¹⁹⁾ 이후 이를 보강하여 1929년 7월 27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이 당사국간에 체결되었다. 동 조약 제2조에는 “포로는 항상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하며 폭행,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

18) 당시 만주지역 주민들은 731부대에 생체실험으로 보내진 것을 “늑대굴에 보내졌다”고 표현하였다 한다. 늑대 머리를 뒤집어 쓴 자 즉 ‘인간의 늑대화’(Agamben, 1995, p.216)를 잘 말해준다.

19) 부속 문서 중 전쟁포로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하며(4조)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어서는 안되며(5조) 과도한 강제노동을 시켜서는 안된다(6조)고 규정되어 있다.

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3조에서는 전쟁포로는 모든 시민적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4조는 차별적으로 대우받아서 안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5조에는 특히 심문을 받을 때 어떠한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되며 심문에 거절한다고 하여 위협을 받거나 모욕이나 어떠한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²⁰⁾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29년 이러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²¹⁾ 그 정신을 준수하여 연합국에 대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의 적용을 희망할 정도였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제국 정부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의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조약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일본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미국 포로에 대해서는 동 조약의 규정을 ‘준용’(apply mutatis mutandis)할 것이다.”²²⁾고 밝혔다. 1942년 1월 5일에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포로로 그 준용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군조차 포로수용소에서의 처우는 당시 미국 정부 등에서 항의할 정도로 가혹하였다(丙海愛子, 1989). 동경 극동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연합군 포로 13만 2,134명 중에서 3만 5,756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27.1%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독일과 이태리의 연합군 포로 사망률 4.0%에 비교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잘 보여준다²³⁾(丙海愛子, 1989 : 11).

20) “No pressure shall be exerted on prisoners to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the situation in their armed forces or their country. Prisoners who refuse to reply may not be threatened, insulted, or exposed to unpleasantness or disadvantages of any kind whatever. If, by reason of his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a prisoner is incapable of stating his identity, he shall be handed over to the Medical Service.”

21) 당시 해군성 차관이 1934년 11월 15일 외무부 차관에게 보낸 官房機密 제1984호의 3번째 서신을 보면, 해군성은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서명에 반대하였다. 첫째 일본제국군은 포로가 되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며, 둘째 악용하는 경우 작전상 불리하고 셋째 제3국의 입히는 군사상 지장을 초래하며 넷째 무기유지를 위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茶園義男, 1988, pp.340~342).

22) 1941년 1월 29일 도쿄 시게노리(東郷武徳) 외무대신이 도쿄 주재 스위스 공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23) 연합군 포로는 미국과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에는 가장 많은 중국군 포로가 제외되어 있고, 독일과 이태리군의 연합군 포로 23만 5,473명과 사망

문제는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네바 조약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더 나아가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국제법적인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주 군벌이나 국민당 정부 그 어느 것도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래서 아무런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관동군에게 당시 ‘전쟁포로’는 국제법적으로 전쟁포로가 아니며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무력집단이었던 것이다. 1932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지역의 식민지체제를 구축하면서 만주 국경지역에서 소련과 몽골과 크고 작은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중국본토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국제법상 전쟁으로 보지 않고 전쟁포로 사무를 위한 포로정보국²⁴⁾도 설치하지 않았다. 소련 적군, 항일게릴라부대, 중국 국민당군, 중국 팔로군 등 크고 작은 전쟁에서 붙잡힌 전쟁포로는 국제법상 아무런 규정도 받지 않아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모든 권리가 정지된 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생체실험 등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 1941년 12월 8일 영미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제법상 정식으로 태평양 전쟁(“대동아전쟁”)을 시작하면서 국제법상으로 포로정보국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하였다. 때문에 붙잡힌 미군, 영국군 등 연합국 포로는 사실상 모든 권리가 정지된 채 육군의 지휘 하에서²⁵⁾ 만주지역 및 중국, 남방지역에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이들 미군 등 연합군의 다수 전쟁포로는 국제법적인 전쟁포로였기 때문에 그들 포로의 최소한의 권한에 대한 고려가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주내의 항일운동가, 소련

자 9,348명에는 당시 가장 많은 소련군 포로가 제외되어 있다.

- 24) 1899년 헤이그선언은 포로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포로정보국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데, 일본은 이에 서명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1902 러일전쟁 직후 러시아포로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그리고 1차대전 중에 독일군 포로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포로정보국을 설치 운영하였다.
- 25) 당시 전쟁포로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육군성은 영미에 선전포고와 함께 전선이 태평양으로 넓어지면서 육군성 내에 1941년 12월 27일 제3차로 포로정보국을 설치하고 1942년 3월 31일 이를 포로관리부로 격상하고 군무원을 대거 모집하여 파견하는 등 포로수용소 관리를 조직화하였다.

밀정이나 소련군, 국민당 군, 팔로군 등 전쟁포로는 ‘국제법상 전쟁포로도 아닌 전쟁포로’로서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관습적 보호를 받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Agamben, 1995)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용소의 다수의 난민으로 확대되었다. 난민은 주권의 경계 밖에 있는 ‘예외상태’에 있지만,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약으로 보호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일본 관동군에게는 점령지의 난민은 ‘국제법적인 전쟁포로도 아닌 전쟁포로’와 같은 지위로 대하였다. 국제법적인 전쟁포로가 아닌 전쟁포로는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에서도 예외적인 범주로서 관동군의 직접적인 지배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특히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쟁포로와 같은 ‘이중적인 예외상태’는 당시 만주국 주권의 경계선에 걸치는 모든 인간 범주들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적국과 내통한 첩자, 불법 월경자 뿐만 아니라 강제 착륙 혹은 착선된 승무원들, 새로 점령한 주민과 적지에서 피난온 난민 등도 그러한 예외상태의 법적 지위 혹은 그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장 헌병대의 작전장교 교본의 ‘포로의 심문 요강’에는 “투항자, 도망병사, 체포된 적국 첩자, 불법 월경자, 강제 착륙 및 착선된 승무원들, 아군 출신으로서 적의 포로가 된 후 도망나온 자, 새로 점령한 지역의 주민 그리고 적진에서 도망나온 주민들은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쟁포로를 취조하고 심문하는 방식으로 심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⁶⁾ 이러한 사고의 근거에는 만주지역이 점령지이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 전체가 국제법상 전쟁포로도 아닌 전쟁포로와 같은 지위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森村誠一, 1983 : 35)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관동군 참모본부 조사부에서 제정한 <포로심문대강(俘虜審訊大綱)>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심문할 때 “拷打辦法은 반드시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고통을 인내하기 어려울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拷打辦法은 유리하다.”, “비교적

26)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235.

용이하며 의지가 박약한 자에게 실정을 제공한다.” 등²⁷⁾ 고문과 구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 고문보다 더욱 잔인한 것은 생체실험에 강제동원되어 생명권을 박탈하였다는 사실이다. 서로 상대방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에서 붙잡힌 전쟁포로에 대한 인식은 당시 매우 잔인하였으나²⁸⁾ 그 중에서도 1933년부터 패망시까지 만주나 중국대륙에서의 국제법상 전쟁포로도 아닌 전쟁포로와 그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저항하는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인식은 더욱 더 잔인하였다. 때문에 만주 및 중국 대륙에서 식민지 질서에 저항하는 식민지 인민들을 대거 체포하여 731부대 特設監獄 시설로 特殊移送하여 희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죄의식은 낮았다. 당시 731부대에서 와타나베 박사의 조수였던 야마우치 도요키(山内豊紀)는 생체실험 과정에서 고바야시 마쓰조(小林信) 준위에게 생체실험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그 때 그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한다. “그 도적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중범들이다. 부대에서 마음대로 잡아온 것도 아니고 (관동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외부에서 압송해 온 사형범들이다. 그런 일은 상관하지 말고 자네 일만 잘 하면 된다.”²⁹⁾ 따라서 特設監獄은 “그 너머에서는 생명이 어떤 법적 가치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생명을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어떤 경계선의 설정”(Agamben, 1995 : 268) 그 이상을 의미하였다.

중국 하얼빈으로 옮겨온 731부대는 초기 전쟁포로 뿐만 아니라 감옥에 수감된 죄수를 생체실험으로 활용하였다. 1933년 8월에 하얼빈 베이인허(背蔭河)에서 가동한 세균연구소는 일본군이 인근에 설치한 동만(東滿)감옥의 1,000명의 수감자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얼빈 근처 헌병대 준위

27) 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p.510.

28) 이러한 포로에 대한 인식의 배면에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1940년 당시 東條英機 육군대신은 전쟁포로에 대한 연합군의 항의에 부딪치면서 다른 한편 戰陣訓을 하달하였는데 그 제8항은 “살아서 포로(虜囚)의 치욕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罪禍의 오명을 남기지 말라”고 적시되어 있다. 즉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큰 수치라고 지시하였다(内海愛子, 1997, p.13).

29) 中央檔案館 等, 1989, p.76.

였던 平中淸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34년 10월 나는 헌병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하사관 이하 3명을 선발 파견하여 시핑(四平)의 세균연습에 참가하였고 1935년 9월 10일 지린(吉林)성 下九台에서 독가스연습에 참가하였다. 세균연습 중에 살해된 중국인이 약 1천명, 독가스연습 시에 신징(新京)과 지린 감옥에 수용된 중국인 약 200명을 이용해 실험하였다.”³⁰⁾

731부대는 이렇듯 1932년부터 처음에는 죄수나 포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였으나 1938년 핑팡 지역에 대규모 생체실험 特設監獄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세균전을 준비하면서 생체실험의 실험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였다. 소련과의 뉘먼한(諾門罕) 전쟁을 앞두고 1938년 3월 내몽고 하이라얼시에서 이시이 시로가 전체 군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³¹⁾ “일러전쟁은 시간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화 무기에서 제일 유력한 것은 세균무기이다. 일본은 세균전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평소에 자신의 업무실력을 쌓으면서 새로운 과학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 군부의 결정으로 관동군 헌병대 사령부는 1938년 1월 26일 ‘特殊移送(special consignment)’의 통칙을 제정하여 실행하라는 제58호 문건을 하달하였다. 特殊移送이란 체포된 첩자나 사상범 등을 관동군 헌병대의 결정에 따라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731부대의 생체실험의 대상(“실험재료”)으로 보내지는 초법적 행위였다.³²⁾ 만주국의 행정 위에 일본 관동군의 지배가 전일하게 관철되는 ‘예외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치였다. 당시 만주국의 형법체계는 생활범죄는 만주국 경찰에 의해, 정치범은 관동군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포는 관동군이든 만주국 경찰이든 모두 할 수 있었다. 최종관할이 이원화된 이원국가였으며, 더 나아가 관동군이 만주

30) 당시 헌병대 준위였던 平中淸一의 선양재판에서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p.62~63).

31) 1954년 8월 21일 선양(沈陽)에서 심문할 때 다케우치 유타카(竹内羊) 군의 증언(金成民, 2008, p.333).

32) 1945년 당시 관동군 사령관 야마다 오토조(山田乙三)는 특수이송 명령에 따라 731부대에 생체실험 실험대상자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280).

국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또 만주국 경찰의 지휘체계가 일본인에 의해 지배되었다(한석정, 1999; 吳旅燕 等, 2013).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13만명에 이르는 비적 등을 포함한 저항세력 속에서 관동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36년 20만명 규모에 이르렀으며³³⁾ 10~12만명에 이르는 만주군과 10만명의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만주 지역을 지배하는 실질 권력이었다. 특히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관동군의 직접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다. 1937년 치안국을 설치하여 군경통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일본인이 만주경찰 10만명 중 1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또 만주경찰의 주요 직위를 독차지하여 실질적으로 ‘내부지도’를 조직화하였다. 1938년에는 보안국을 설치하여 항일 활동 및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방첩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토벌작업을 실시하였다³⁴⁾. 따라서 만주국의 통치체제는 공식적으로 관동군과 만주 경찰 및 행정의 이중권력 체제였으나(한석정, 1999) 실제 만주 경찰과 행정은 관동군에 지배된 식민지체제와 다름이 아니었다. 관동군의 特殊移送은 특히 세균전 준비에 대한 일본군의 중요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관동군의 만주 지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치였다.

1932년 만주지역에 731부대를 세운 이유가 새로 점령해서 주권적 의미에서 ‘예외상태’에 놓인 비일본인 즉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등 ‘벌거벗은 생명’을 대거 생체실험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변경에 가까운 곳에 설립하여 소련과의 세균전을 위하여 소련의 기후와 동일한 기후조건에서 세균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세균실험을 위하여 만주지역에서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실험재료’로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⁵⁾ 당시 만주지역은 남만주철도가 건설되면서 1910년대부터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대

33) 1943년에는 최대 76만명 규모에 이를 정도로 대동아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일본 최대의 군부였다(한석정, 1999, p.53).

34) 東北淪陷十四年總編室/日本植民地文化研究室, 2010, p.54.

35) 극동재판에서 731부대 제4부 부장을 역임한 가와시마 기요시(川島清) 군의 소장의 증언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p.118~119, 262-263)

규모 이주가 시작되어 만주 지역 인구가 증가하였다. 1920년대부터는 조선인의 이주가 본격화되는 등으로 만주 인구는 1930년대 후반 3천5백만에서 1940년대 초 4천2백만에 이르게 되었다. 만주 인구 중에 중국인이 대다수를 점하지만 1937년부터 집단이주정책으로 한국인의 이주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3~4%에 이르고 있었으며 몽고인이 2.6%, 일본인이 2% 정도 그리고 러시아인이 무국적인³⁶⁾을 포함하여 0.1% 정도였다.

[표 2] 1940년 만주지역 민족별 인구구성 (단위 : 명)

	총인구수	비율
중국인 (한족+만주족+회족)	38,303,684	91.94%
한국인	1,345,212	3.23%
몽고인	1,081,634	2.60%
일본인	862,245	2.07%
러시아인 등 기타 외국인	6,494	0.02%
무국적인	61,403	0.15%

* 滿洲國 治安部警務司, 康德7年末 滿洲帝國現住戶口統計 pp.6~7

일본 관동군은 1910년 합병된 조선의 변경지역과 1932년 3월 성립된 만주국 전역에서 일본의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권력이었다. 적어도 만주 지역에서 만주족에 의한 만주국의 정부 통치의 외양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벗어던질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적 기반이었다. 만주 지역에서 포로수용소나 난민수용소 뿐만 아니라 관동군 헌병대의 ‘特殊移送’은 모두 ‘예외상태’의 식민지 지역에서도 ‘예외적인’ 즉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권력의 참모습이었다. 항일활동가 및 사상범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과 지역주민공동체 전체가 모든 권리가 박탈된 ‘예외상태’에 놓인 것은 그러한 관동군의 실제

36) 만주지역의 무국적인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소련 적군에 의해 쫓기던 백군과 관련된 소련인, 유대인 등으로 1920년대 만주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1930년 말 40년대에 여전히 6만 이상의 무국적인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었다.

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균전은 일본 대본영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수군사전략으로서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었으며 特殊移送된 포로, 항일운동가, 사상범 등 대부분 벌거벗은 생명은 20~30대이며 40대가 고령일 정도일 정도로(森村誠一, 1983 : 110) 젊은 신체는 세균전을 위한 생체 실험에 적합한 것이었다.

4.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와 特殊移送 (1) : 항일활동가와 사상범

만주 지역의 항일활동 참여자들과 사상범은 관동군에 의해 特殊移送되어 잔인한 생체실험의 가장 직접적 희생자였다. 항일활동가들의 생체실험 동원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투쟁과 민족해방을 억압하였고 뿐만 아니라 실제 살상무기를 든 상태가 아닌 항일운동가를 생체실험에 이용하여 생명을 박탈한 잔인한 행위였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생체실험 동원 문제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첩자로 여기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윤리적이며 잔인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사상과 당시 적대국인 소련의 간첩 가능성(혐의) 사이의 연관성은 당시 나찌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폭력수단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생체실험에의 동원은 비윤리적인 전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731부대의 생체실험 실험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만주사변 등) 이러저러한 일련의 사건은 궁핍한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아시아의 평화에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마루타 같은 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 이하의 존재라고 느꼈다. ... 731부대에 파견된 연구원, 학자에서 마루타에게 어떠한 동정을 갖는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731부대 군속과 군인 전원이 마루타는 살해되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森村誠一, 1983 : 58)

항일‘분자’와 사상‘범’은 반식민지 만주국의 벌거벗은 생명으로 국제법상의 전쟁포로도 아닌 전쟁포로와 같은 지위로 간주되었다. 전쟁포로와 같은 이중적인 예외상태는 당시 만주국 주권의 경계선에 걸치는 모든 인간 범주들에게로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일활동가, 사상범은 헌병대 작전장교 교본에 적힌 “적국의 첩자”나 “불법 월경자”로서 간주되어 국제법적인 전쟁포로도 아닌 전쟁포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즉 항일분자와 사상범은 신분처리절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문방법에 있어서 혐의자의 신분에 대한 규정에서 전쟁과정에서 붙잡힌 전쟁포로와 같은 혹은 비슷한 지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特殊輸送’ 처분은 반만(주)항일의 죄상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 행위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상급에 보내면 헌병사령관을 통해 비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심사하여 ‘特殊輸送’이 확정된다.”³⁷⁾ 하지만 먼저 特殊移送의 기준 자체가 항일유격대 뿐만 아니라 사상범, 그런 혐의자와 일반 생활범죄자 등 식민지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939년에서 1941년까지 국경지역 사무쓰(佳木斯)헌병대장을 역임한 다치바나 다케오(橋武夫) 헌병 대좌는 “특수이송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4가지 범주들이다. 외국 간첩이라는 죄명을 가졌거나 외국 감찰기관과 내통한 혐의가 있는 자들 그리고 빨간수염이라고 불리는 중국 유격대원들이며 그 다음은 반일본 요소와 구제불가능한 형사범죄범들이다.”라고 증언하였다.³⁸⁾ 特殊移送의 초기는 이처럼 유격대원이나 첩자 등 정치범과 구제불가능한 형사범이라는 분명한 범죄대상 규정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이후 그 범위는 점차 광범한 혐의자로 확대되고 있었다. 또 1942년 10월에서 1943년 11월까지 동안(東安)헌병대장을 맡았던 하리키 다케시(平木武)도 特殊移送은 헌병대가 체포한 항일지하작업인원 혹은 반만(주)항일사상이 강

37) 1954년 8월 3일 선양재판에서 堀口正雄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89).

38)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p.360~361.

한 자들을 심문한 후 헌병대장이 관동 헌병대 사령부의 비준을 받아 이시이 부대로 이송해 세균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자백했다.³⁹⁾ 반일사상 일반적으로의 확대는 731부대로의 “特殊移送”기준과 관련된 1943년 3월 12일 일본헌병대가 고시한 관동군 헌병대 고시 제120호 문건도 잘 보인다. 이 문건의 特殊移送 기준은 무엇보다도 초기 규정보다 많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그 죄질 정도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이용가치가 없는 자,
2. 한번 이상 간첩 혹은 파괴활동에 참여하여 친소반일사상을 가진, 이용가치가 없는 자,
3. 그 범죄에 대해 법정심판 후 석방될 예정이지만, 아편 등 중독자로서 돌아갈 집이 없는 떠돌이나 완고하게 반일정서를 가지고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다시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자,
4. 항일유격대원 혹은 그와 동일한 위험한 활동 경력이 있으며 감화가능성이 없는 자,
5. 비밀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그 생존이 (일본)군과 국가에 해가 되는 자,
6. 경미할지라도 특별이송 대상과 동일한 사상 및 비행에 관여한 자로서 장차 석방하기 어려운 자”⁴⁰⁾

1, 2, 4 항목은 지속되었지만 3 항목처럼 석방될 유망민이 새로 포함되어 있고 5 항목처럼 특수이송 대상이 간첩이나 항일유격대원을 넘어 훨씬 넓게 식민지 지배체제에 해가 되는 자로 확대하고 있으며 6 항목처럼 위 사항이 경미할지라도 석방하기 어려운 자를 포함할 정도로 훨씬 주관적 혐의자를 새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혐의자는 “만주국 내부의 상황에 따라야 하고 국정상, 사회상, 사회도덕상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야”⁴¹⁾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평가기준이 시국의 변화에 따라 자의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혐의자로의 확대는 1942년부터 동녕(東寧)

39) 1954년 6월 9일 선양재판에서 平木武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111).

40)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163, pp.166~168.

41) 1943년 3월 12일 발령한 관동군 헌병대 고시 120호의 비고란에 적시되어 있다.

헌병대 작전과장을 지냈으며 1944년 만저우리(滿洲里) 헌병분대장을 지낸 모리(森三吾)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헌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기밀문서로 헌병대장에게 직접 하달한” 特殊移送의 기준은 4가지 즉 “1. 소위 첩자공작자로서 군법재판에서 사형 이상을 받을 자, 2. 가족친척 혹은 家屬친척이 적은 자, 3. 같은 사안에 타 관계자가 없는 자, 4. 장래 이용할 수 없는 자”(이)라고 증언했다.⁴²⁾ 만주지역에서 항일유격대원보다는 광범한 첩자혐의자들로 확대되어 그 기준이 이제 特殊移送의 사회적 파급효과에까지 그 초점이 이동되었음을 잘 보인다. 즉 가족 친지가 적어서 가족으로부터의 항의나 불만이 적은 자, 한 가지 사안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특수이송을 보내겠다는 생각,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모리 헌병대장은 “정치범이 아니라도 사형에 처할 일반사범에도 특수이송할 수 있다”⁴³⁾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特殊移送의 대상은 세균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던 1940년대로 넘어가서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광범한 일반생활인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지배체제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어 아무런 공식적인 조사나 심판도 받지 않고 731부대의 생체실험 실험대상자로 보내져 최종 살해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特殊移送의 기준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과정에서도 잘 보인다. 무엇보다도 첫째 特殊移送 여부의 판단은 실제 현장에서는 관동군 헌병대에서 의해 용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한 결과이다. 수시 검문을 통해 “관현의 인증이 없는” 불법 거주증명서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행동容疑 농후한 자” “첩보원이 체포한 자” 등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요구하였다. 즉 “수차 및 수습차의 심문과정에서 잔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간첩임을 인정하도록 했다.”(近藤昭二/松村高夫, 2001) 이 점을 모리(森三吾) 헌병대장은 더 분명하게 밝혔다. “특별이

42) 中央檔案館 等, 1989, p.88.

43) 中央檔案館 等, 1989, p.88.

송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은 곧 잔혹한 형(벌)심(문)이다. 사람을 잡아 온 후, 곧 물고문, 구타, 전기고문, 손가락고문 등 형벌심문을 채용하여 첩자임을 강박하였다.”⁴⁴⁾ 현장 헌병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작전장 교본에는 고문의 의미와 방법, 결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63.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고문은 진실한 정보를 주지 않고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지속 실행되어야 한다. 고문은 상대적으로 쉽게 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진실을 실토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속도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진실을 왜곡할 위험 또한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문이 고문 후 제국에 대한 저항과 약 감정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64. 고문의 방법은 반드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죄인이 고통을 받되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어떤 고문의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고문을 실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당사자 외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된다. 특히 절대로 기타 포로들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반드시 고향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문은 다음과 같이 실행될 수 있다. 1. 피심문자를 강제하여 똑바로 서고 입을 다물게 할 것. 2. 두 손의 손끝에서 멀지 않은 곳 사이에 연필을 끼어 넣고 손끝을 끈으로 묶고 연필을 돌릴 것. 3. 피심문자를 뒤로 해서 (발가락을 약간 들고) 코와 입을 동시에 물속에 쳐 넣을 것. ...

66. 심문하다가 부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반적 상황과 조국의 이해를 고려해서 어떤 경우도 충분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⁵⁾

이렇듯 극도로 잔혹한 취조과정 중에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혹한 취조와 심문 결과를 통해 얻은 간첩 및 반일활동에 대한 자백은 사

44) 中央檔案館 等, 1989, p.89.

45)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p.236~237.

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잔인한 취조와 심문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特殊移送의 근거도 매우 주관적이다. 취조와 심문 후 용의자를 억류하고 해당 헌병분(건)대에서 취조상황을 헌병대장에게 보고하면서 特殊移送를 건의하는 신병처치 의견을 제시한다. 각 헌병대장은 이 취조상황보고에 자신의 소견을 첨부하여 特殊移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동군 헌병대 사령부에 발송하고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의 명의로 관련 지령(指令)을 내려 이를 허가하면 해당 헌병(분)대에서 신병을 하얼빈 헌병대에 特殊移送한다(金成民, 2008 : 786). 이러한 特殊移送의 전 절차를 통해서 보면 용의자를 억류, 구금한 현지 헌병분(건)대장의 特殊移送 의견을 담은 취조상황 보고가 이후 헌병대 본부와 사령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경부근에서 행상의 경험이 있어 월경하였던 과일상인 지싱티안(季興田)의 경우를 보면, 1941년 7월 23일 현지 후린(虎林)분대장은 “성질(性) 완미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억이용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特(殊)移(送)扱에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취조상황을 보고하였고 관할 동안(東安)헌병대장은 “분대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特移扱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며 열차운행 등 동안(東安)의 관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현지(의 실정)에 의해 엄중처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소견을 적시하여⁴⁶⁾ 헌병대 사령부에 特殊移送 신청서를 보내 허가받았다. 현지 농어민으로서 소련국경을 넘어간 적이 있는 동디안촨(董殿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41년 7월 29일 현지 후도우(虎頭)분대장은 5일 동안의 취조상황을 보고하면서 55세 “노령으로서 억이용의 가치가 없어 特(殊)移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동안헌병대장은 特殊移送 신청서에 “현지(의 실정)에 의해 엄중하게 처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소견을 적시하였다.⁴⁷⁾ 이런 헌병대장의 명의로 보낸 특수이송 신청서에 대해

46)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p.109~110.

47)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p.155~156.

헌병대 사령부에서 이견을 제시한 어떠한 자료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병을 억류하여 취조를 담당한 현장 헌병분(전)대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현장 분(전)대장의 特殊移送 의견서를 보면, 그 근거가 매우 자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인신을 말살하는 생체실험용 特殊移送를 제안하는 근거가 대부분이 소련첩자로서 역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그 외 반일활동이나 성격 그리고 현재 상태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평가가 현장 헌병대의 선입견과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이다.

[표 3] 헌병대의 特殊移送 의건의 근거 단어 (빈도수가 높은 순서)⁴⁸⁾

	첩자 및 사상범	평가	성격	현재상태	활용성
1	소(련)첩(자)	(없음)	(없음)	(없음)	역이용가치 없음
2	정보제공	친소의식 농후	성격적으로	改悛의情없어	(없음)
3	入蘇, 첩자교육	反滿항일의식	性(格)교활	첩자의식 강해	이용가치 없음
4	사례금 수령	前歷의 實害 커	性(格)頑固(迷)		
5	(없음)	항일匪團활동	물질적 욕심		

첩자라는 근거 또한 잔인한 심문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일상 지싱티안(季興田, 당시 51세)의 경우에도 소련국경지역에서 오랫동안 행상을 하여 여러 차례 월경하였고 1930년부터 잡화상과 과일상을 하면서 드나들었던 적이 있어 1937년 12월부터 첩자교육을 받고 소련첩자로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제공이나 첩자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⁴⁹⁾ 빈농 동디안환(董殿全, 당

48)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2001)과 中國吉林省檔案館 等(2003)의 특수이송 자료에 근거.

49) 1941년 7월 23일 후린(虎林)헌병분대에서 작성한 ‘소련첩자 季興田 취조상황’에 관한 보고(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p.103~110).

시 55세)의 경우에도 국경 근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월경하여 과거 밀수업자 경력 때문에 소련첩자로 체포된 같은 지역의 농민 리우한성(劉漢升)의 권유로 첩자가 되었으며 여러 차례 월경하여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가난한 농민이 군사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가혹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⁵⁰⁾

첩자 혐의가 있더라도 짜아오지밍(矯吉明, 44세)의 경우도 못지않게 가혹해 보인다. 1941년 8월 20일 억류되어 10일간 취조 끝에 잡화상 점원, 탄광노동자로 일해 오다가 만주에 들어온 후 만주군내 노동 중 소련군에 의해 납치되어 소련 국경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포섭되어 첩자로서 2회 입소하여 보상금으로 200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았다. 후도우(虎頭)분견대장은 8월 30일 이에 대한 취조상황을 보고하면서 마땅한 신병처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유하면서 취조 중”이라고 하자 동안(東安)현병대장은 “금년 6월 이후에 활동상황을 재규명하는 것이 신병의 처치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채근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⁵¹⁾ 이에 같은 날 황급히 재취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보내면서 “금년 6월 8일 入蘇지령자에 조사되어 日滿軍 군정(세)을 제보하라는 지령을 받아 歸滿 후 관(헌)의 시찰(이) 엄중하여 국경선의 경비봉쇄에 의하여 발견될 것을 두려워 활동을 중지하고 (타인의) 농작물 제초에 종사하고 8월 16일 해고, 歸虎(후린(虎林)현으로 귀가)하여 20일 비밀리 억류되었다.”라고 하여 아무런 활동 내용이 없는 보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대장은 국경지역에 이런 위험분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이용의 가치가 없어 特移拔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⁵²⁾ 이러한 의견에 대해 현병대장은 거의 기계적으로 “신병의 처치에 관하여 분견대장의 소견에 동의하여 특(별)이송하는 것이 적당하

50) 1941년 7월 29일 후도우(虎頭)현병분대에서 작성한 ‘소련첩자 董殿田 억류취조상황에 관한 보고’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p.149~156)

51)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p.273~274.

52)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284.

다고 인정”된다고 소견을 제시하여⁵³⁾ 신청서를 내고 그는 결국 731부대로 特殊移送되어 생체실험 대상자로 희생되었다. 왕명춘(王明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련첩자교육을 받은 후) 入滿 직후 억류되어 하등 實害가 없으나 오직 소련지령을 확실히 실행할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상 시국에 비추어 特移로”⁵⁴⁾ 의견을 제시하여 特殊移送되었다. “혐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했는지 상관이 없다.”⁵⁵⁾라는 것이 당시 지배적인 생각이었다(森村誠一, 1983 : 58).

이렇듯 실제 활동과 상관없이 소련첩자라는 심증 혹은 혐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조금이라도 위협한 인물로 간주되었을 경우 일본 헌병대의 입장에서 이용가치가 낮으면 바로 생체실험용 特殊移送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억류와 구금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特殊移送의 대상으로 삼았다. 잔인한 취조과정을 통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면 취조나 심문과정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취조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⁶⁾ “형벌을 받고도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군사법정의 재판을 거쳐 석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시이 부대에 보내 처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예전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⁵⁷⁾ 사상범의 경우는 더욱 더 자의적이다. 신문 사설에 반대하는 글을 보낸 사람⁵⁸⁾까지 추적하여 사상범으로 몰았다.

이러한 자의적인 결과는 간첩혐의자의 처분결과를 보면 잘 보인다. 간첩

53)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283. 이러한 헌병대장의 소견은 대부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문장으로 반복되고 있다.

54)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73.

55) 평양(平陽)鎮 헌병분대와 치치하얼(齊齊哈爾)헌병대에 근무했던 上屋芳雄의 증언(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445).

56) “고문을 받으면 거의 반죽음상태인 바 (죄가 없다하더라도) 절대로 석방할 수 없다” 앞의 증언(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2001, p.446).

57) 1942년부터 동녕(東寧)헌병대에서 작전과장을 지내고 1944년 만주리 헌병대장을 지낸 森三吾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88).

58) 1941년 11월 당시 다렌(大連)헌병대 특고과에 근무 중인 今中俊雄은 베이징 헌병대로부터 베이징 모신문사의 사설에 반대하는 글을 보낸 사람을 추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체를 추적하여 체포하여 이시이 부대로 特殊移送하였다고 증언하였다(中央檔案館 等, 1989, p.106).

혐의로 억류한 사람들은 재판에 송치되어 징역 5년 이하를 받은 사람도 절반에 이르지만, 상당부분이 중형 이상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에 송치되는 경우도 [표 6]에서 보면 사형, 징역 10년이 상당하며 바로 特殊移送되거나 특수기관으로 이첩되어 첩자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기관에 이첩되거나 첩자로 활용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特殊移送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주목되어야 한다.

[표 4] ○○헌병대의 첩자혐의로 억류된 사람들의 처분결과⁵⁹⁾

	1940년	1941년	1942년
억류자 전체 수		226명 (100%)	450명 (100%)
재판에 사건 송치	(60%)	65명 (28.8%)	225명 (50.0%)
특수이송	(6%)	88명 (38.9%)	143명 (31.8%)
특수기관 이첩		33명 (14.6%)	24명 (5.3%)
만주경찰 이첩			3명 (0.7%)
첩자로 이용 중 도망 가장 역이용		30명 (13.3%) 6명 (2.7%)	49명 (10.9%)
취조 중 사망		4명 (1.7%)	4명 (0.9%)
취조 중			2명 (0.4%)

출처 : 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七三一」部隊罪行鐵證 : 特別移送·防疫檔案選編, pp.205~206, 215에서 재구성

[표 4]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1940년을 넘어 첩자혐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 헌병대의 경우만도 1941년 226명에서 1942년에는 거의 100% 증가한 450명에 달했다. 이것은 “만주에 대한 소련의 첩보활동은 국제관계의 변환에 따라” 즉 “독소전쟁이 개전되어 소련의

59) 特殊移送 자료 즉 吉林省檔案館 等(2003)의 pp.205~206 ‘억류첩자 처분별 일람표’와 p.215 ‘억류첩자의 처분별 일람표’가 관련 자료 조각으로 어느 헌병대의 자료인지 분명치 않으나, 두 자료의 1941년 각 항목별 구성비가 동일하고 전년도 구성비를 적시하고 있으며 비슷한 상황인식을 곁들인 결론부분이 첨부되는 등 형식이 같아 동일한 헌병대의 1941년과 1942년도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첩보조직 및 첩보수단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⁰⁾ 그에 따라 이곳 헌병대의 特殊移送 대상자 수는 1941년 88명에서 1942년 143명으로 크게 늘었다. 각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수이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첩자혐의로 억류된 전체 억류자의 1/3에 이르고 있었다. 적어도 1/3 이상이 판결도 없이 特殊移送되어 생체실험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1940년에 6%였던 特殊移送 대상자가 1941년 38.9%로 급증하고 재판에 사건을 송치하는 건수가 감소한 점이다. ○○헌병대에서는 이를 “준엄한 처벌주의가 채용된 결과”라고 적시되어 있으나,⁶¹⁾ 동안(東安)헌병대의 1941년 억류첩자 처벌결과(표 5)에서도 特殊移送 건수가 전체 45.7%에 이르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얼빈헌병대의 보고에서도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억류된 첩자혐의자 17명 중에 8명 즉 47.1%가 특수이송으로 처리되었다.⁶²⁾ 이것은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세균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731부대의 평평 실험실이 더 활발하게 가동되고 생체실험의 수요가 증가하여 特殊移送의 대상자를 늘린 결과로 보인다.

[표 5] 동안(東安)헌병대의 1941년 첩자혐의로 억류된 81명의 처분결과⁶³⁾

처리방식	사람 수	비율
재판에 사건 송치	14명	17.3%
특수이송	37명	45.7%

60) 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p.206.

61) 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p.206.

62) 이 자료는 하얼빈헌병대가 보고한 ‘抑留諜者處分一覽表’로서 자료유실로 시기와 기간을 알 수 없다(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pp.213~214).

63) 이 자료는 ‘昭和16年度蘇聯諜者捕捉一覽表’라는 제목으로 東安헌병대가 1942년 1월 30일 보고한 자료이다. 본 자료는 특수기관 이첩과 첩자로 이용 중인 사람을 26%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억류된 혐의자 81명이 순번이 적시되어 성명, 나이, 주소, 활동상황, 억류기관, 처리결과 등이 자세하게 적힌 별지가 첨부되어 있다(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pp.245~265)는 점에서 중복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수기관 이첩	17명	25.9%
첩자로 이용 중	4명	
국경지대로 추방	6명	
방견 (감시)	3명	
취조 중 사망	1명	
취조 중	2명	

출처 : 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七三一」 部隊罪行鐵證 : 特別移送 · 防疫檔案選編, pp.243~244에서 재구성

억류 중인 첩자협업자의 40%를 재판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생체실험 대상으로 송부하는 이러한 무리한 特殊移送 비율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더불어 1942년에는 더욱 더 많은 첩자협업자를 체포하여 억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기인한 듯하다. [표 5]에서 보듯이, 1942년에는 첩자협업자를 450명으로 배로 늘려 그 31.8%인 145명을 特殊移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동녕(東寧)헌병대의 1942년 억류첩자 처분결과(표 6)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녕헌병대는 1942년 1년간 95명을 첩자협의로 체포하여 억류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수이송(特移撥) 대상자는 최소 29명으로 전체 체포억류자 중 30.5%에 해당하며, 타 부대에 이첩하여 이용 후 特殊移送할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特殊移送 대상자는 최소 30명으로 전체의 31.6%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표 6] 동녕(東寧)헌병대의 1942년 첩자협의로 억류된 95명의 처분결과⁶⁴⁾

처리 방식	사람	자세한 사항
재판에 사건 송치	39명	사형 8명, 징역 10년 1명, 징역 5년 이하 6명, 심리 중 사망 6명, 현재 심리 중 17명

64) 일람표는 1943년 1월 20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뒷부분에 95명 모두의 성명, 나이, 주소, 학력과 직업, 간첩으로서 활동 동기, 지령기관, 지령사항, 보수자금, 활동상황, 억류 동기, 억류 장소 및 신병처분 일시가 자세하게 적힌 별지가 첨부되어 있다(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pp.176~195). 자료의 일부가 1945년 관동군이 퇴각시 소각되어 유실되어 있다.

특수이송	29명	
특수기관 이첩	4명	
첩자로서 이용 중	3명	東寧분대에서 2명, 石門子분견대에서 1명
타 부대 이첩	2명	1명은 타부대 이첩 이용 후 특수이송으로 1명은 국경경비대에 신병 이첩
취조 중 사망	1명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 중	5명	
타 기관에 억류처분	12명	

출처 : 中國吉林省檔案館 等, 2003, 「七三一」 部隊罪行鐵證 : 特別移送 · 防疫檔案選編, p.175에서 재구성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반만항일협업의자는 모두 特殊移送로 승인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헌병사령부의 特殊移送 이외에 만주국 경찰국과 보안국에서도 자의적으로 결정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다. 하얼빈경찰청 사법과의 오야부 다케오(大藪武雄) 경좌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41년 6월 어느 날 하얼빈경찰청 사법과 가게 시게다(鹿毛繁太) 과장은 나에게 압송된 죄인들 중 사형에 처할 2명을 선택해 이시이 부대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의 명에 따라 두 명의 러시아 사람을 선택했다. 그 중 한 명은 국경을 넘은 죄목으로 체포된 소련 병사 예크사이예브였는데, 당시 스물대여섯 살이었다. 이튿날 사법과에서 버스 한 대가 와서 총 10명의 죄인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한 두 명도 있었다.”(金成民, 2008 : 800) 1941년 7월 마쓰모도 히데오(松本英雄)은 하얼빈 경찰청 사법과 수사부에서 일할 때 사법과에서 2명의 소련 사람을 체포했고 외사과에서 6명의 소련 사람을 체포했다. 후에 이 8명의 소련 사람들은 모두 제731부대에 이송되어 세균실험을 당했다.⁶⁵⁾ 경찰국뿐만 아니라 보안국에서도 特殊移送 절차 없이 731부대로 보냈다. 국경지방 싱안베이(興安北)성 지방보안국에서 1940년 10월부터 1943년

65) 당시 하얼빈 경찰청 사법과 수사역으로 있었던 松本英雄의 선양재판에서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103).

3월까지 간첩혐의자 90여명을 체포하여 심문 후 40명을 이시이 부대로 보냈다.⁶⁶⁾

731부대의 생체실험의 대상자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반대한 항일활동 및 의식 혐의를 대상으로 당시 피식민지 지역의 다수 일반인으로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었다. 제국 일본군이 식민지 지배자의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혐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피식민지 지역의 다수 일반인의 반일 정서를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러한 혐의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森村誠一, 1983 : 57-8).

5.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와 特殊移送 (2) : 지역주민들

두 가지 자료집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증언 자료를 기초로 볼 때, 세균전을 위한 731부대의 特殊移送은 포로나 항일운동가나 사상범에 한정되지 않고 피식민지 일반인 대다수가 그 대상이었다. “피식민지 일반인”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에 사는 일반 생활인으로서 그들 다수는 일본 제국주의적 지배에 반대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점에서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첩자로 전화될 수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特殊移送이 제도화되지 않을 때인 1938년 이전에도 다수의 식민지 일반인들이 생체실험의 대상자가 되었다. 신징(新京)부근 현병분대 경무계에 있었던 와타나베(渡邊長太夫)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34년 11월 10일에서 12월 25일 약 1개월반 중에 나는 현병으로 위만주국 시평(四平)성 四平街에 있는 일본 관동군 방역급수대 시평(四平)지부에 파견되어 경계업무를 맡았다. 그 방역급수대는 곧바로 하얼빈 핑팡의 이시이 세균부대의 전신이다. 내가 파견현병기간에 살아

66) 싱안베이(興安北)성 지방보안국에서 근무한 原口一八의 선양재판에서의 증언(中央檔案館等, 1989, p.102).

있는 사람으로 전기와 가스 등 화학실험을 하고 살해된 중국 일반주민이 약 60명이나 된다. 구체적으로...四平역에서 일본군 수비대 모 군조로부터 기차로 운송된 60명의 무고한 중국 일반주민을 인계받아서 기차로 방역급수대의 시핑 지부의 구치소에 보내어 감금하게 하여 나는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매일 경계를 섰다. 동시에 실험적 수요에 따라 매일 2명 내지 3명의 중국 일반주민들을 보내 전기와 가스실험의 희생물이 되게 하였다.”⁶⁷⁾

1938년 이후 特殊移送은 이러한 식민지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731부대의 생체실험용으로 강제가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험대상자의 수요에 맞춰 변경지역인 만주의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생체실험용으로 동원하였다. 자무쓰(佳木斯)현병대 푸진(富錦)현병분대에서 있었던 成井升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38년 3월 15일 자무쓰현병대는 탕위엔(湯原)일대에서 중국공산당 吉東省委 즉 북만성위에 대해 대규모의 진압 및 체포 작전을 진행하였는데, 약 200명 중국 공산당원과 항일공작원을 체포 투옥시켰다. 당시 후진현위 공산당원의 체포를 위하여 나는 분대장의 명령을 받아 노구치(野口)군조의 지휘 하에서 그 외 3명의 현병을 대동하고 푸진현, 지시엔(集賢)鎮에서 15일 여명에 중국 공산당 후진현 서기 평유상(馮玉祥), 선전 劉모와 위원 3명을 체포하여 분대로 압송하였다. 노구치 군조와 가와사키(川崎)군조로부터 20일 수심차 형벌심문을 진행하였으며 나는 구치소를 감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형벌심문에 협력하였다. 감옥 4개월 반 후 자무쓰현병대장의 명령에 따라 나와 가와사키 군조는 상술한 5명의 중국공산당원을 하얼빈 이시이 세균부대로 보내 참살했다.”⁶⁸⁾ 1940년부터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항일요원의 대대적인 색출작업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일반주민들을 特殊移送하였기 때문이다. 1939년 10월 하얼빈현병대에서 “여명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0명의 중국 항일운동가를 체포하여 이시이 부대로 보냈으

67) 中央檔案館 等, 1989, p.63.

68) 1937년 12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자무쓰(佳木斯)현병대 푸진(富錦)현병분대의 서무계 조수였던 成井升의 선양재판에서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91).

며⁶⁹⁾ 동안(東安)헌병대는 1941년 7월 6일 관내에서 항일요원의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34명을 억류, 심문하여 7월 25일 정리작업 처리보고를 하면서 주민 중 4명을 特殊移送시키고, 8명을 특수기관에 인계하였으며 2차로 또 주민 14명을 억류, 심문하였다.⁷⁰⁾ 또 1943년 12월 푸진(富錦) 헌병분대장 쇼지 조지(廣治常二) 소위는 아마후지 요시로(山藤吉郎) 조장과 오노 다케지(小野武次) 군조, 헌병 10명과 헌병보조원 20명과 함께 ‘청류공작’(清流工作)이라는 이름으로 수이빈현(綏濱縣)에서 항일 지하요원, 관련자 및 일반주민 100명을 체포했다. 잔혹한 고문 끝에 발진장티푸스에 걸려 구치소에서 2명이 사망했고 병이 위중한 10명이 석방되었으며, 이시이 세균부대로 이송되어 살해된 사람이 11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석방되었다.⁷¹⁾

또 다카미 다다오(高見忠夫)의 자백에 따르면, 1944년 6, 7월 하얼빈 헌병대본부의 모든 인원들은 헌병대장 와다(和田) 대좌의 지휘 하에 소련 무선통신인원을 체포하기 위해 마자거우(馬家溝) 지역 약 50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대수사를 벌여 소련 사람 카지미로브를 체포했다. 후에 아이하라(相原) 조장이 물고문을 하고 억이용을 시도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시이 부대에 이송해 화학실험용으로 이용하고 살해했다(金成民, 2008 : 800). 1944년 지닝(錦寧)헌병대장 上坪鐵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44년 11월 나는 부어리(勃利)헌병분대장 기무라(木村光明) 소위에게 중국 항일지하공작원 이동승을 정탐해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이동승은 평양(平陽)과 지닝지구(支寧)에 관련된 자가 많다는 정보를 제출하여 나는 평양과 지닝헌병분대장에게 명령하여 해당 지구에서 쌍위엔칭(桑元慶)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국 항일지하공작원 약 90명을 체포하였다. 1945년 4월 중에 그 중 10명을 하얼빈 특무기관으로 이송해서 특무기관에서 하얼빈 세균부대로 보내 잔인하게 학살되었다. 그

69) 1954년 9월 21일 선양재판에 제출한 錦州헌병대 근무 津田玄郎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96).

70) 中國黑龍江省檔案館 等, 1989 : 3-13

71) 1943년 12월 당시 푸진 헌병분대에서 인사계 내무반장 준위로 있던 다나가미(田上末藏)의 선양재판에서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124).

나머지 80명은 석방하였다.”⁷²⁾

관동군 헌병대의 1939년 8월 8일 작전명령 224호에 잘 나타나 있듯이, 特殊移送의 인수 인계시에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등⁷³⁾ 실제 만주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동군 헌병대는 特殊移送 초기부터 생체실험을 담당한 731부대와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일본의 식민지배체제와 731부대의 요구가 맞물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特殊移送은 731부대의 실험대상자의 수요에 맞춰⁷⁴⁾ 반일 정서가 미만된 만주지역 생활인들을 체포하여 강제이송하여 생체실험에 이용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楊彥君, 2010 : 265).

이러한 사실은 관동군 헌병대가 731부대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이송한 ‘特殊移送’ 자료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패망 직후 관동군은 관련 자료를 대부분 소각 처리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첩자협일자 중 特殊移送 자료의 실명 확인명단을 보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미확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장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다수가 농민, 노동자 등 가난한 일반생활인이며, 국경지역의 헌병대에서 훨씬 더 많은 特殊移送을 한 것으로 보아, 국경지역의 가난한 일반생활인이 다수 特殊移送되어 생체실험의 실험대상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과 중국 변경지역을 자신의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 국경지역 생활인들이 소련으로의 월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 경우 소련첩자의 혐의로 체포되고 特殊移送되어 731부대의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희생된 듯하다.

72) 中央檔案館 等, 1989, p.131.

73) Materials of the Trials, 1950, p.184.

74) 실제 하얼빈 헌병대를 통해서 구속하고 있는 신원을 파악하여 731부대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경우도 많았다. 1940년 6월 하얼빈 경무국 사법과 과장 鹿毛繁太는 하얼빈 헌병대로부터 하얼빈 경무국 사법과에 전화가 와서 조사 중인 소련인 2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中央檔案館 等, 1989, p.100).

[표 7] 첩자협의를 받아 特殊移送으로 희생된 실명 확인 명단의 구성⁷⁵⁾

나라별 구성	직업별 구성	체포된 헌병대별 구성
중국인 328 (96%)	미확인 186 (54.7%)	미확인 79
한국인 6 (2%)	농민 45 (13.2%)	佳木斯헌병대 32
소련인 4 (1%)	노동자 62 (18.2%)	東寧헌병대 14
몽고인 2 (1%)	자영업자 13 (3.8%)	虎頭헌병분대 14
	경찰 등 공직자 20 (5.9%)	鷄寧헌병대 13
	무장단체 6 (1.8%)	大膽子川헌병분대 13
	기타 (무직) 8 (2.4%)	虎林헌병분대 13
		承德헌병대 12
340명	340명	北戴河헌병분대 12

이렇듯, 피식민지 다수 인민들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소련의 극동재판 등 일본가담자의 증언과 중국측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중후반과 40년대 중국인, 한국인, 소련인, 몽고인 등 거주민 대부분이 일본군의 지배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본군의 혐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일반인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오히려 特殊移送은 동원의 하나의 방법일 뿐 사실 特殊移送이라는 승인도 없이 생체실험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일본제국군은 세균전을 위한 생체실험을 1급 군사적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특수군사구역으로 철저히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밀을 위하여 인근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직접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 경찰국 및 보안국도 무직유랑민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하고 731 부대로 넘겨 생체실험으로 살해하였다. 1943년 3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75) 지금까지 자료로 확인된 特別移送受害者名錄 (鮑海春, 2010, pp.211~228) 339명에다가 누락된 4명을 추가하여 343명으로 조정되었다.

하라구치 가쓰야(原口一八)는 만주국 무단장(牡丹江)시 경찰국에서 특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중국 일반주민 797명을 ‘무직 유랑민’이라는 이유로 체포하여 노무흥국회 무단장 지부에서 설립한 노무 훈련소에 감금시켰다. 이후 고문을 통해서 그 중 유직자 506명은 석방하고, 제731부대 무단장 지부에 보내 세균실험으로 사망한 자가 25명이며 나머지 270명은 훈련소에 넘겨 2-3개월의 훈련을 시킨 후 노동자로 썼다.⁷⁶⁾ 또 1945년 5월 상순 간잔준사쿠(關山順作)가 아이훈(愛璜) 국경경찰대 특무부에서 특무주임경좌로 있을 때, 무직자들의 급증이 치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자마(風間) 대장의 명에 따라 각 관할지역에서 중국인 74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 62명은 허강(鶴崗)탄광에 보내 강제노동을 시켰고 5명은 석방했으며 7명은 항일 관련 죄명으로 하얼빈 특무기관을 통해서 731부대에 보내 살해했다.⁷⁷⁾

6. 맺는 말 : 731부대 特設監獄으로의 特殊移送과 생체실험 희생의 역사적 의미

731부대는 1938년 하얼빈 평광에 대규모 特設監獄을 포함한 일본제국군의 체계적인 세균무기의 연구 및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다가오는 세균전을 대비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장되면서 세균전이 중요한 군사 전략이 되면서 세균무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特設監獄의 생체실험은 군사적으로 더욱 중요하여 관동군은 항일만만 세력과 소련침자 등 사상범을 체계적으로 생체실험의 희생자로 삼는 特殊移送 조치를 실시하였다. 관동군은 점령지인 만주지역의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등 벌거벗은 생명을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 없이 대거 체포하여 특

76) 당시 만주국 무단장시 경찰국 특무과장이었던 原口一八의 선양재판에서의 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116).

77) 1954년 7월 23일 선양재판에서의 서면증언(中央檔案館 等, 1989, p.135).

殊移送하여 세군무기의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실험(자)대상자로 사용하여 살해하였다.

관동군의 特殊移送 자료를 통해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의 동원과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만주국의 항일운동가 및 사회주의세력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보호되지 않은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전쟁포로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로 特殊移送하는 예외적 조치가 취해졌다. 둘째 항일반만 세력 및 소련침자 등 식민지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주관적 혐의자를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特設監獄에 特殊移送하였다는 사실이다. 특수이송의 범주는 현장 헌병대의 인식을 통해 볼 때 1943년 기준이 일관되게 관철되었다기보다는 유동적이었으며 또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한 고문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였으며 또 매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特殊移送하였다. 셋째 항일운동가 및 소련침자 등 식민지 체제에 저항하는 주관적 혐의자는 식민지 체제에 불만을 갖는 만주지역의 모든 인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수이송의 기준이 항일반만 세력과 중범죄자에서부터 생활범죄자나 무연고자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련과 국경지역에 사는 다수의 일반거주민들은 생활상의 목적으로 왕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련침자의 주관적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생체실험의 수요가 늘어 작전명령 하에 지역주민들을 대량 체포하여 필요한 희생자를 대거 동원하였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USSS Foreign Ministerium, 1950, *Materials of the Trials*, Mosco : Foreign Language Press
- 森村誠一, 1983, 『惡魔の飽食』, 東京 : 角川書店
- 中央檔案館·中國第2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編, 1989, 『細菌戰與毒氣戰』, 北京 : 中華書局, 1989.9
- 栗屋憲太郎·吉見義明, 1989, 『毒ガス戰關係資料』, 東京 : 不二出版
- 田中明/松村高夫 編, 1991, 『七三一部隊作成資料』, 東京 : 不二出版
- 茶園義男 編, 1988, 『俘虜ニ關スル諸法規類聚』, 東京 : 不二出版
- 內海愛子 編, 1989, 『俘虜取扱た關する諸外國からの抗議集』, 東京 : 不二出版
- 中國黑龍江省檔案館·黑龍江省人民對外友好協會·日本ABC企劃委員會 編, 2001, 『「七三一」部隊罪行鐵證 : 關東憲兵隊 “特別輸送” 檔案』, 中國 : 黑龍江人民出版社, 2001.12
- 中國吉林省檔案館·日本日中近現代史研究會·日本ABC企劃委員會 編, 2003, 『「七三一」部隊罪行鐵證 : 特別輸送 · 防疫檔案選編』, 中國 : 吉林人民出版社, 2003.9
- 近藤昭二, 2003, 『七三一部隊細菌戰資料集成』, 東京 : 柘書房
- 中央檔案館 編, 2005, 『日本侵華戰犯筆供 第二冊』, 北京 : 中國檔案出版社, 2005.5

2차문헌

- 金成民, 2008, 『日本軍細菌戰』(일본군 세균전, 하성금 옮김) (서울 : 청문각), 2010
- 金成民·中野勝 編, 2009, 『日本軍細菌戰原隊員證言集』, 黑龍江人民出版社
- 楊彥君, 2009, 『七三一部隊細菌戰貽害研究 - 以哈爾濱鼠疫流行爲例』, 黑龍江人民出版社
- 金成民·楊彥君 主編, 2010, 『731部隊罪行國際學術研討會論文選編(上)』, 內蒙古文化出版社
- 鮑海春 主編, 2010, 『侵華日軍細菌戰資料選編 第1輯』, 內蒙古文化出版社
- 楊彥君, 2010, 『侵華日軍要塞地域 “特別輸送” 問題研究』, 金成民/楊彥君 主編, 『731部隊罪行國際學術研討會論文選編(上)』, 內蒙古文化出版社
- 東北淪陷十四年總編室·日本殖民地文化研究室 編, 2010, 『偽滿洲國的真相 - 中日學者共同研究』,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吳旅燕·張闖·王坤, 2013, 『偽滿洲國法制研究』, 北京 : 中國法政大學出版社
- 劃田啓史郎, 2013, 『15年戰爭における日本の戰爭醫學犯罪と化學兵器』, 『15年戰爭と日本の醫學醫療研究會會誌』 13(2)
- 서이중, 2014, 『일본제국군의 세균전 과정에서 731부대의 농안·신징 지역 대규모 현장 세균실험의 역사적 의의』 『사회와 역사』 103집(2014. 9)

- 장세윤, 2005,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 서울 : 명지사
-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부산 :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 · 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부산 : 소명출판사
- Agamben, Giorgio, 1995, *Homo sacer Il portare sovrano e la nuda vita* (호모사케르 :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 Agamben, Giorgio, 1999, *Remnants of Auschwitz : the Witness and the Archive*, translated by Heller-Roazen, New York : Zone Books
- Agamben, Giorgio, 2003, *Statio di eccezione*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09
- Benz, Wolfgang/Barbara Distel (hg.), 2005, *Der Ort des Terrors : Geschichte der nationalsozialistischen Konzentrationslager Band 1 : Die Organisation des Terrors*, Muenchen : C.H. Beck
- Brackman, Arnold C., 1989, *The Other Nuremberg :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 Trials*, London : Collins
- Harris, Sheldon H., 1994, *Factories of death :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 Routledge
- Kirfe, Thomas, 2011, *Zur Beitrag der Vermessung bei der Bewahrung historischer Geschehnisse (am Beispiel des ehemaligen Haeflingenslagers in der Gedenkstaette Buchenwald)*, Diplomarbeit zur Erlangen Universitaet
- Nie, Jing-Bao, et al. (eds.), 2010, *Japan's wartime medical atrocities : comparative inquiries in science, history and ethics*, London : Routledge
- Williams, Peter/David Wallace, 1989, *Unit 731 : Japan's secret biological warfare in World War II*, Free Press

■ Abstract ■

Bare Life in Manchuria and Victims for Human
Experimentations in Special Prison of Unit 731
—Focusing on Special Consignment Documents of 1938~1945—

Suh, Yi-Jong

This paper is to develop an account of the recruitment process of human experiment subjects in special prison of unit 731 through an analysis of “special consignment” documents of Kwandong army. In Chapter 2 general peoples in Manchuria was basically considered as bare life outside all internal legal protections by Kwandong army, and especially anti-Japanese activists and Soviet spies was considered as dual bare life outside all internal &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s. In Chapter 3 an analysis of special consignment documents reveals that anti-Japanese activists and Soviet spies was consigned into special prison for human experimentations on basis of subjective suspicion and cruel torture with unstable criteria, so that many general peoples especially in Manchuria's border regions with Soviet Union was included as human experiment subjects in special prison. Chapter 4 demonstrated a situation of specially consigned general peoples in Manchuria by special consignment and other documents.

Key words : Special Prison, Extraordinary State and Bare Life, Human Experiment Subjects, Anti-Japanese Groups, Ideological & political offenders